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한성희)		
	주 소	우37863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2114	팩스번호	0505-106-4335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한양엔티(박영태)		
	주 소	우0583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동 511-515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전화번호	02-2201-7870	팩스번호	02-2201-788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정승진)		
	주 소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114	팩스번호	02-3400-3900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4호
- 명 칭 :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
- 기술분야 :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공지반 녹화시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여 방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서,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렌드(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용착하여 단층(One-layer)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이다.

○ 신기술의 범위

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렌드(Polymer Blend)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용착하여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06.26. ~ 2028.06.25.(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